

변경 대 비 표

[신탁계약서]

1. 펀드명 : 하나 크레딧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4 년 03 월 05 일

4. 대비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하나 크레딧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	하나 크레딧플러스증권 <u>자</u> 투자신탁[채권]
제 2 조(용어의 정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생략) (신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현행과 같음)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 크레딧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생략) (신설) ③(생략) (신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 3 항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 크레딧플러스증권 <u>자</u> 투자신탁[채권]”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현행과 같음) 6. 모자형(자투자신탁) ③(현행과 같음)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하나</u> <u>크레딧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u> ⑤집합투자업자는 제 3 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제 4 항 각호의 모투자신탁 이외에 다른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4 조(투자 목적)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을 법 시행령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5 조(투자 대상자산 등)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u>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u>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제 3 조제 4 항 각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현행과 같음)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사모사채권(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 및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이하 “채권”이라 한다)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3.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4.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5. 금리스왑거래 6.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	--	--	--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7. <u>환매조건부매도</u> 8. <u>투자신탁재산으로</u> <u>보유하는 증권</u>의 대여 9. <u>증권의 차입</u> 10. <u>법시행령</u>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생략)	
제 16 조(투자 대상자산 취득한도)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u>채권에의 투자</u>는 <u>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u> <u>이상으로 한다.</u> 2. <u>자산유동화증권에의</u> <u>투자</u>는 <u>투자신탁 자산총액의</u> <u>40% 이하로 한다.</u> 3. <u>어음에의 투자</u>는 <u>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u> <u>이하로 한다.</u> 4. <u>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u> <u>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u> <u>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u> <u>이하가 되도록 한다.</u> 5. <u>금리스왑거래는</u> <u>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u> <u>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u> <u>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u> <u>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u> <u>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u> <u>되도록 한다.</u> 6. <u>집합투자증권등에의</u> <u>투자</u>는 <u>투자신탁 자산총액의</u> <u>30% 이하로 한다.</u> 7. <u>환매조건부매도는</u>	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2.제 15 조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u>증권의</u> <u>대여는</u> <u>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u> <u>50% 이하로 한다.</u> 9. <u>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u> <u>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u>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 260 조제 1 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파생결합증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상법」 제 469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 4 조제 7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증권 및 그 밖에 비시장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이하 “비시장성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1. <u>금융투자업규정 제 5-</u> <u>23 조의 2 제 1 항제 1 호부터</u> <u>제 7 호까지의 자산</u> 2. <u>국채증권, 정부가</u> <u>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u> <u>채무증권, 지방채증권,</u> <u>특수채증권 및 둘 이상의</u> <u>신용평가업자로부터 모두 상위</u> <u>2 개 등급에 해당하는</u> <u>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u> 3. <u>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u> <u>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가 용이한</u> <u>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u> <u>자산</u>	(삭제)
제 17 조(운용 및 투자제한)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3.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4.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8. (삭제)
--	--	---	--

		<u>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u> <u>발행한 채권, 법</u> <u>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u> <u>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u> <u>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u> <u>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u> <u>해당한다.) 또는 어음,</u> <u>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u> <u>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u> <u>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u> <u>국가가 발행한 채권,</u> <u>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u> <u>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u> <u>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u> <u>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u> <u>또는 법 시행령</u> <u>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u> <u>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u> <u>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u> <u>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u> <u>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u> <u>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u> <u>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u> <u>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u> <u>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u> <u>경우</u> 5. <u>파생상품매매에 따른</u> <u>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u> <u>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u> <u>가액의 100%를 초과하여</u> <u>투자하는 행위</u> 6. <u>파생상품의 매매와</u> <u>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u> <u>등이 발행한 증권의</u> <u>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u> <u>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u> <u>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 7. <u>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u> <u>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u> <u>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u>	
--	--	---	--

		<u>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u> 8. <u>투자신탁재산으로</u> <u>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u>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행위</u>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 52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 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 기준으로 한다. 마.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	--	---	--

		<u>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	
제 18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조 변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략) 5.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6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5 호 내지 제 9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6 조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u>(삭제)</u>

		3. <u>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u> 4. <u>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u> 5. <u>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u> ③제 19 조제 2 호본문, 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은 <u>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④집합투자업자는 <u>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 17 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u>	(삭제) (삭제)
제 23 조의 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u>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u>
제 24 조의 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u>

			<u>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 25 조(환매 가격 및 환매방법)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u> 얻은 경우에는 <u>모</u>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6 조(환매 연기)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①제 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제 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 <u>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u>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 28 조(기준 가격 산정 및 공고)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u>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u>)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
제 33 조(상환 금등의 지급)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u>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u>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u>모투자신탁재산인</u>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5 조(수익 자총회)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u>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u> <u>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u> (신설) ⑩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4 항, 제 6 항, 제 8 항 및 제 9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u>신탁계약 및</u> <u>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u> <u>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u> <u>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u> <u>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u> <u>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u> <u>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u> <u>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u> <u>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u> <u>영향을 미치는 경우</u> <u>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u> <u>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u> <u>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u> <u>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 ⑩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4 항, 제 6 항, 제 8 항 및 제 9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 38 조(판매 수수료)	수익증권저축 약관 개정사항 반영(2014.06.2 5 개정)	④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 3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④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 3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u>통장거래</u>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u>저축</u>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1 조(신탁 계약의 변경)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한다. 다만,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한다. 다만,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3 조(집합 투자기구의 해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u>이 투자신탁을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전환한 후</u>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하나 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하나 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 48 조(공시 및 보고서 등)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5(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 5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u>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u>)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u>모투자신탁 의 내용을 포함</u>)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 5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24 년 03 월 05 일부터 시행한다.

[간이투자설명서]

1. 펀드명 : 하나 크레딧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기재사항 보완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4 년 03 월 05 일

4. 대비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하나 크레딧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	하나 크레딧플러스증권 <u>자</u> 투자신탁[채권]
요약정보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u>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u>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요약정보-투자목적 및 전략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u>[투자목적]</u>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하 생략) (신설) <u>*비교지수</u>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채권에 60%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u>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을</u>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현행과 같음) <u>[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추가</u> <u>기존 펀드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을 모펀드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으로 변경</u> <u>*비교지수</u>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채권에 60%이상 투자하는 <u>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하는</u>

		KIS 중단기지수 1~2Y*100%를 비교지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u>집합투자자기구로서</u> , 성과 비교를 위하여 KIS 중단기지수 1~2Y*100%를 비교지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요약정보- 분류	-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신설)	<u>모자형</u>
요약정보- 투자비용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신설)	* <u>상기의 도표의 총보수·비용은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의미합니다.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용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u>
요약정보- 주요투자위험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u>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u>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펀드 관련 위험: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하나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며,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펀드 관련 위험: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하나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며,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1. 펀드명 : 하나 크레딧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2024.1.1 시행)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4 년 03 월 05 일

4. 대비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문서전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펀드명: 하나 크레딧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	펀드명: 하나 크레딧플러스증권 자 투자신탁[채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10.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이 투자신탁을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전환한 후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하나 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하나 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마. 특수형태 (생략) (신설)	마. 특수형태 (현행과 같음)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	정보 업데이트	-	2024 년 03 월 05 일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구의 연혁			이에 따른 투자신탁명칭변경 (하나 크레딧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 하나 크레딧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				
5. 가. 운용전문인력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추가				
6. 가. 집합투자구의 종류 및 형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신설)	모자형(자투자신탁)				
6. 다. 모자형구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신설)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크레딧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70% 이상</td></tr></table>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크레딧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	70% 이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크레딧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	70% 이상						
7. 집합투자구의 투자목적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추가				
8. 가. 1) 투자대상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채권 60% 이상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등	하나크레딧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70% 이상 투자 유동성자산 : 10% 이하 투자 등				
8. 가. 2) 투자제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이해관계인거래 제한 동일종목투자제한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제한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제한 파생상품 투자제한 등	이해관계인거래 제한 그 외 제한사항 삭제				

8. 나. 1) 투자대상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u>[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추가</u> 기존 펀드의 투자대상이 모펀드의 투자대상으로 이동
8. 나. 2) 투자제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기재사항 보완	(신설)	<u>[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추가</u> 기존 펀드의 투자제한이 모펀드의 투자제한으로 이동 4. <u>파생상품투자:</u>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이 투자신탁은 국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 등의 우량등급 국내채권 및 기업어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신설)	이 투자신탁은 국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 등의 우량등급 국내채권 및 기업어음에 <u>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u>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u>[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등] 추가</u> 기존 펀드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등이 모펀드의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등으로 이동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u>집합투자기구</u>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u>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u>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가.	모자형집합투자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u>이</u>

일반위험	자기구로 변경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 나. 특수위험	기재사항 보완	소규모펀드 관련 위험: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하나	소규모펀드 관련 위험: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하나

	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며,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설)	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며,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u>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u>)이 경과하였음에도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부실자산 등의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 상각에 따른 투자자산의 가치는 이 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부실자산이 발생했을 경우 환매가 연기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부실자산을 나머지 정상자산과 분리하여 별도의</u>
--	---	--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투자신탁은 부실자산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라. 이 집합투자기 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자기구로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자기구로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1. 가.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신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11.나.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신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나.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 <u>및 이</u> <u>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u> <u>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u> <u>연기된 경우</u> 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12. 가.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 산의 평가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신설)	<u>기준가격의 산정방법</u> ※ <u>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u> <u>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u> <u>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u> <u>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u> <u>자투자신탁과는 달리</u> <u>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u> <u>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u> <u>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u> <u>있습니다.</u>
13. 나.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	<u>합성 총 보수 및 비용 추가</u>
14. 나. 4) 연금저축계 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 C- PE 수익증권 가입자 14. 나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2,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2024.1.1 시행)	<u>분리과세 한도(연간 연금수령액</u> <u>1,200 만원)</u>	<u>분리과세 한도(연간 연금수령액</u> <u>1,500 만원)</u>

C-P2E 수익증권 가입자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가. 투자자총회 등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1)투자자총회의 구성 (생략)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u>신탁계약에서 정한</u>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생략)	(1)투자자총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 수익자총회는 법령, <u>신탁계약서 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u>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
1.나. 잔여재산분 배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u> 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나. 임의 해지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u>이 투자신탁을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전환한</u> 후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하나 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하나 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가.2)자산 운용보고서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u>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u>)를 작성하여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가.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92 조제 1 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u>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u>)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92 조제 1 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나. 2)수시공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u>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u>)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합니다.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	------	---------------------------